

직원에 대한 조세 감면



국제사업활동(IBA) 프로그램에 등록된 회사의 직원은 전문가로 등록하여 납부한 주 세금 중 개인소득세에 대해 첫 두 해 동안은 100%, 3년째는 75%, 4년째는 50%, 5년째는 25%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 전문가

- 등록회사의 임원 경영진 구성원은 임원 전문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임원은 자신이 적격 국제 사업에 관련한 업무를 하도록 요구하는 서면 계약을 체결했어야 합니다.
- 해당 임원은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비거주자였어야 합니다.
- 해당 임원 및 이 임원과 관련한 모든 사람은 이 등록회사와 반드시 독립적인 거래를 해야 합니다.
- 임원 전문가가 근무 시간 중 특정 비율을 이 등록회사의 국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 해당 임원은 반드시 최저 \$250,000의 연봉을 받아야 합니다.
- 프로그램 참여사의 관련 그룹에서 단 2명의 임원 전문가만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 해당 임원은 자신이 캐나다 주민이 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국제 특허 사업인 국제 사업을 수행하는 등록회사는 임원 전문가로만 전문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제 사업 전문가

국제 금융 활동 전문가

- 국제 금융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들의 직원은 이 지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직원은 등록회사와의 서면 고용계약 체결 직전까지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었어야 합니다.
- 해당 직원은 반드시 최저 \$100,000의 연봉을 받아야 합니다.
- 해당 직원은 행정 지원 활동이나 사무 지원 서비스가 아니라 국제 금융 활동이 전문이어야 합니다.
- 해당 직원은 고용 계약에 따라 자신이 전문으로 하는 적격 국제 금융 활동 수행에 근무 시간의 최소한 70%를 사용해야 합니다.

행정 지원 및 사무 지원 서비스 전문가

- 적격 행정 지원 및 사무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등록 사업체의 직원은 이 지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직원은 등록회사와의 서면 고용계약 체결 직전까지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었어야 합니다.
- 해당 직원 및 이 직원과 관련한 모든 사람은 이 등록회사와 반드시 독립적인 거래를 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 참여사의 관련 그룹에서 단 4명의 직원만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 해당 직원은 반드시 최저 \$100,000의 연봉을 받아야 합니다.
- 해당 직원은 자신이 적격 국제 사업에 관련한 업무를 하도록 요구하는 서면 계약을 체결했어야 합니다.
- 행정 지원 또는 사무 지원 서비스 전문가가 근무 시간 중 특정 비율을 이 회사의 국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 해당 직원은 자신이 캐나다 주민이 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정 국제 사업 전문가

- 등록 국제 사업(국제 텔레비전/영화 배급)을 수행하는 회사들의 직원은 이 지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직원은 등록회사와의 서면 고용계약 체결 직전까지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었어야 합니다.
- 해당 직원은 반드시 최저 \$100,000의 연봉을 받아야 합니다.
- 해당 직원은 고용 계약에 따라 이 등록 사업체에서 적격 국제 금융 활동 수행에 근무 시간의 최소한 70%를 사용해야 합니다.
- 국제 특허 사업인 국제 사업을 수행하는 등록회사는 임원 전문가로만 전문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절감 분석 - 임원 전문가

가정

- 해당 임원의 5년간 연봉이 \$250,000임.
- 고용회사는 IBA 프로그램 등록회사임.
- 해당 임원은 등록된 임원 전문가임.
- 주 및 연방 세율은 5년간 변경되지 않고 유지됨.

\$250,000*에 대한 추산 절감액*

	주 및 연방 세율 합계	주 세금 납부액에 대한 추산 환급액
제1년	29.00%	\$30,000
제2년	29.00%	\$30,000
제3년	32.67%	\$22,000
제4년	36.35%	\$15,000
제5년	40.02%	\$7,000

* 이 계산방식은 적용받을 수 있는 개인 및 기타 세금 공제를 무시한 것임.

세금 절감 분석 - 직원 전문가

가정

- 해당 직원의 5년간 연봉이 \$100,000임.
- 고용회사는 IBA 프로그램 등록회사임.
- 해당 직원은 등록된 국제 사업 전문가임.
- 주 및 연방 세율은 5년간 변경되지 않고 유지됨.

\$100,000*에 대한 추산 절감액*

	주 및 연방 세율 합계	주 세금 납부액에 대한 추산 환급액
제1년	26.00%	\$8,000
제2년	26.00%	\$8,000
제3년	29.08%	\$6,000
제4년	32.15%	\$4,000
제5년	25.23%	\$2,000

BC 주의 경쟁력 있는 개인 소득 세율

	최대 개인 소득 세율
홍콩	15.0%
싱가포르	20.0%
캐나다(IBA 전문가)	29.0%
인도	30.0%
멕시코	30.0%
미국	35.0%
한국	38.0%
캐나다(BC 주)	43.7%
프랑스	45.0%
중국	45.0%
독일	45.0%
일본	50.0%
영국	50.0%
네덜란드	52.0%

KPMG 2012년 개인 소득 세율 조사(KPMG 2012 Individual Tax Rate Survey)

- BC 주민들은 현재 최대 \$120,000까지 개인 소득에 대하여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주 개인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 BC 주 정부 지명자 프로그램(British Columbia Provincial Nominee Program)은 외국인 고급 전문 인력과 기업가를 신속하게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2006년 이후, 218,000명 이상의 이주자들이 BC 주에 정착하여 다국어 구사 능력을 지닌 풍부한 인력창고, 국제 네트워크, 다양한 문화를 구성합니다.
- BC 주의 인구는 2006년에서 2011년까지 5년간 7%가 성장했으며 이 7% 중 66% 이상은 국제 이민의 결과입니다.
- 밴쿠버는 광범위한 대중 교통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밴쿠버 국제 공항은 캐나다에서 규모가 2번째로 크고 분주한 국제 관문으로 아시아를 연결합니다.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밴쿠버를 최근 조사 대상 140개 도시 중 가장 살기 좋은 도시들에 포함했습니다.
- 머서(Mercer Human Resource Consulting)가 실시한 2011년 삶의 질 조사에서 밴쿠버는 북미 1위 및 세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적격 국제 사업에 대한 BC 주의 세제상 이점

BC 주의 국제 사업 활동(IBA) 프로그램은 등록회사가 적격 국제 사업(특허 활동 75%)으로 취득한 순소득에 대해 납부한 주 세금을 최대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IBA 등록회사들은 적격 소득에 대해 실제 15%의 세율을 누리게 됩니다.

적격 활동이란 성격상 금융 및 비금융 분야에 관련된 것으로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은 비주재 회사입니다.

- 비주재 회사를 위하여 금융 상담 또는 금융 조사 제공
- 외환 거래(주재 또는 비주재 회사, 외환이 주 사업인 금융 기관과 기업만 해당)
- 비주재 회사(독립적인 거래에 한함)에 대한 대출 또는 예금 수취
- 비증권사에 의한 비주재 회사와의 단기 투자 거래

- 비주재 회사를 위하여 외환 또는 투자 관리
- 상환청구 불능 방식으로 매입한 매출채권을 비주재 회사로부터 팩터링
- 비주재 금융 사업체의 금융 활동과 직접 관련한 행정 지원 서비스 제공
- 비주재 회사와 거래하는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취급, 또는 캐나다 비주재 회사와 비캐나다 증권을 거래하는 캐나다 비주재 회사의 대리인 역할
- 적격 특허 판매, 양도 또는 인가, 해당 기업이 보유한 적격 특허 발명품을 기반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적격 특허에는 생명과학 및 특정 친환경 관련 특허(폐수, 연료 전지, 풍력 발전, 태양력 발전, 조력 발전)가 포함되며 최대 8백만 달러까지 75%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캐나다 국외로 영화 상영 및 TV 방영 권리 배급

유의사항: 적격 사업에 디지털 미디어 배급, 청정 기술, 탄소배출권 및 거래, 추가 투자 관리, 행정 활동(이 같은 신규 분야에 대한 IBA 프로그램 혜택 확대가 발표되었으나 이 같은 활동을 유효하게 만드는 규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이 포함되도록 새롭게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AdvantageBC 국제 사업 센터(AdvantageBC International Business Centre, 이전 BC주 국제 금융 센터) 밴쿠버는 1986년에 설립되어 국제사업활동(IBA) 프로그램을 통해 입법화된 조세 감면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BC 주로 국제 사업을 유치합니다. AdvantageBC는 조세 감면 프로그램뿐 아니라 BC 주가 기업 투자 장소로서 제공하는 다수의 이점을 알리는데, 여기에는 교육 수준이 높고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인력, 탁월한 통신 인프라, 청정 에너지와 경쟁력 있는 에너지, 높은 삶의 질 등이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AdvantageBC 웹사이트 www.advantagebc.ca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사업활동(IBA) 프로그램은 BC주 재정부(Ministry of Finance)가 관리합니다. 적격 회사가 되려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부 웹사이트 www.sbr.gov.bc.ca/business/Income_Taxes/International_Business_Activity/iba.htm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 자료에 수록된 정보는 편의상 안내용으로만 제공된 것으로 관련법의 내용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사업활동법(International Business Activity Act, IBAA)에 따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이 법을 특정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13년 6월
Specialist

AdvantageBC 연락처

브루스 플렉스만(Bruce Flexman), MBA, FCA

소장

전화: 604.683.6627

팩스: 604.683.6646

이메일: bflexman@advantagebc.ca

지미 미첼(Jimmy Mitchell)

부소장, 사업 개발 담당

전화: 604.558.1007

팩스: 604.683.6646

이메일: jmitchell@advantagebc.ca

www.advantagebc.ca

